

의안번호	2219316
의 퇴 인	박상웅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8.
추 계 번호	26F290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속인의 적격투자자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및 세액공제 등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의3(상속세의 투자 전환 등)	○ 상속인이 상속세를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, 상속세의 납부유예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 - 적격투자 대상: 사회기반시설,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 - 적격투자 요건: ① 투자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 ②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투자에 사용 ③ 기타 투자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- 기타 투자금액의 산정방법, 특례내용(납부유예 기간, 공제범위)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2조의3(상속세의 투자전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상속인이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속세의 납부유예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, 상속인의 투자전환에 따라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72조의3 신설)
 - 개정안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신 사회기반시설 등 규정된 대상에 대해

투자(이하 ‘적격투자’)하는 경우,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유예 또는 공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적격투자 대상: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, ②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, ③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, ④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한 투자, 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
- 적격투자 요건:
 - ① 투자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
 - ②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투자에 사용
 - ③ 기타 투자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- 기타 투자금액의 산정방법, 특례내용(납부유예 기간, 공제범위 및 공제율)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의 세수 감소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속인의 상속세 중 적격투자로 전환되는 규모와 상속세 납부유예 및 공제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투자대상, 요건, 투자금액 산정 및 특례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속인의 상속세에서 적격투자로 전환되는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투자의 대상, 요건, 투자금액의 산정 등 추계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개정안은 적격투자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,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외에도 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투자”를 포함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음
 - 또한, 적격투자의 요건 중 투자규모 등의 요건과 투자금액의 산정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상속세에서 전환되는 적격투자액을 추정할 수 없음
- 또한, 적격투자에 따른 납부유예나 공제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납부유예의 기간, 공제율 및 공제범위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등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